特許情報管理의 必要性

金 鍾 協
〈KORSTIC特許情報部長·理博〉

1 序 言

우리나라의 現下 工業發展 速度로 보아 멀지 않아 開發途上國의 테두리를 벗어날것 같다. 그렇게 되면 輸出의 樣相도 달라질 것이고 輸出競爭, 輸出國多邊化 및 貿易의 自由開放體制에까지 到達하게 될 것이다. 그때 가서는 우리의 商品이 海外에서 世界 各國의 特許와 衝突할 可能性과 그 確率이 커진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企業體는 지금부터 미리 商品生產計劃에 들어가기 전에 全世界의 特許情報를 환히 알고 있어야 한다. 상품이 完成된 다음에 남의 특허와 相衝하거나 또는 製品의 性能과 質이 남의 것 보다 技術面에서 못하고 그 原因이 특허정보에 어두워서 그랬다면 당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 自社의 獨特한 發明을 保護하기 위해서도 특허정보에 대하여 特別한 準備作業, 다시 말해서 특허정보에 대한 管理가 必要하게 될것이다.

2 特許情報에 대하여

특허정보의 特徵을 보면 두가지 特性이 눈에 뜨인다. 첫째로는 公開되지 않는 숨은 秘密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과 둘째로는 그 비밀을 賣買하는 財產權으로 다루고 있는 點이다. 國家的으로 볼 때에는 外國의 특허를 우리나라에서 實施할려면 貴重한 外貨를 使用料라는 名目으로 外國에 支拂(輸入)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外貨의 浪費라 할까 流出을 防止 하기 위해서도 自己나라의 발명을 助長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고 이미 특허가 된 자기나라의 발명에 대해서는 政府가 보호하고 育成하여야 할 責任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허는 기술정보도 될 수 있고 또 財產權利情報도 될 수 있으므로 여기에 人間社會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財產權다툼이 벌어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특허정보를 대하거나 다루는 사람의 態度 또한 두 가지로 分類된다. 즉 特許法, 特許制度, 特許權利등의 재산쪽을 다루는 사람과 특허를 技術情報, 科學資料, 技術資料로서 硏究檢討하는 사람 즉 기술쪽을 다루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

最近까지 우리나라의 特許關係人士들의 行動傾向과 態度를 보면 全部가 다 그러하지는 않지만 多分히 재산권으로서의 특허의 一面만을 너무 重視하고 偏重하여 왔었다. 極端的인 例를 들면 不正, 買收, 背信, 作亂, 허위, 뒷去來 등 참으로 이맛살을 찌프리게 하는 事件들이 우리의 周邊에 너무나 많이 있었으며, 우리나라의 純粹한 科學者나 技術者이 發明意慾을 꺾어 버리거나 짓밟은 事例가 너무나 많았던 것이다.

根本的으로 특허법, 특허제도, 특허권 같은 것은 善意의 科學技術的 發明을 보호하고 또 남의 發明權을 保護하는 것이 취지임에도 不拘하고 이제 特許問題하면 골치 아픈 문제로 크로즈업 되는 傾向이 있음을 是認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現象은 그 누구의 책임인가를 따지기 전에 本人은 여기에 重要한 事實 몇가지를 指摘코저 한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現

在 與件이 先進國 모양으로 研究施設이 좋고 研究論文, 技術資料가 豊富하고 또 研究者의 實力이 훌륭한가 하고 反問할때에 否定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 하나 변변하게 자랑할 만한 발명이 나오지 않으니 즉 김치국 만드는 사람은 적은데 숫가락만 들고 넘보는 企業人만 많은 것이 오늘날 우리의 發明界의 現實이 아닌가 생각 된다.

발명은 곧 기술이고 그 기술이 文書化된 것이 곧 특허정보이므로 특허정보를 管理한다는 말은 곧 技術文書를 관리한다는 뜻이 되겠다. 기술문서라는 것은 研究結果와 데이타를 記載한 技術明細書가 곧 그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기술명세서를 果然 누가 다룰 것이며 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嚴選된 과학자, 기술자가 特別한 管理技法으로 이 특허정보를 다루워야 할 것이다.

발명의 내용은 요즈음에는 차츰 高度로 科學的이고 技術的인 것으로 되어간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社會에서 科學研究를 깊이 하고 많은 技術的 經驗을 가진 사람만이 특허정보를 다루고 있는가 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특허정보가 不動產登記文書나 家屋臺帳과 같은 것과는 嚴然히 다를진대 과학과 기술의 背景이나 知識없이 특허정보를 論할 수는 없을 것이며, 특허문제를 터치 하기도 事實上 困難할 것이다.

앞으로는 우리의 商品이 海外에서 先進諸國의 것과 競爭을 하게될 때, 설령 우리 나라에서 特許權을 얻었다고 하여도 國際的으로 外國 것을 侵害하였다고 하면 볼장 다 보게 된다. 이제부터는 精神을 바짝 차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本人이 여기에서 소리 높이 외치고 싶은 점은 특허정보를 기술정보로서 取扱하라는 것이다. 특허속에 있는 기술, 숨은 秘密, 작난을 부리는 條目을 척결할 수 있는 眼目과 實力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허문서가 토지의 부동산문서 같은 것이 아니라는 점과, 특허권을 쥔 企業體가 繁榮한다는 것은 三尺童子도 다 알고 있다.

특허정보는 경우에 따라서는 司書의 손으로도 分類整理할 수 있고 또 관리할 수 있으며, 法的 訴訟問題는 辨理士나 辯護士가 代行할 것이고, 審査는 該當 官廳에서 公正하게 다룰 것이다. 그러나 구태여 우리가 특허, 특허하고 神經을 곤두 세우는 現實의 本質的問題는 오히려 특허라는 이름의 기술 그 自體가 怪物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나온 國際特許分類表(I.P.C)를 보면 본인의 말이 그릇되지 않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例컨대 국제특허분류표의 Co7d는 複素環式化合物을 다룬 項目인데 完全히 專門的인 有機化學, 有機合成 問題를 다루고 있으며 그 水準은 大學課程化學의 水準을 훨씬 超越하고 있다. 多年間 研究에 從事하지 않은 사람은 明細書를 코앞에 대 주어도 分類表부터 理解하기 힘든다. C12d의 13/06 13/08 같은 項目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大學敎材에도 없는 새로운 기술들이다. 이것들을 볼때에 外國에서는 이미 특허정보를 보기를 高度의 科學技術情報로서 대하고 있음을 充分히 알 수 있는 것이다. 국제특허분류표와 더불어 특허제도의 國際的統一化(P.C.T)가 착착 進行 중이라고 듣고 있다. 기업체의 特許課나 辨理士事務所나 官廳의 審査關係官들도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국제적인 進步의 흐름에 對處할 수 있도록 準備하여야 할 때가 왔다.

深奧한 知識과 老練한 專門的 經驗없이는 이제 특허문제를 다루기 힘드는 時代가 되어버린 것이다. 科學的인 特許情報管理의 業務를 시작하게 하는 客觀的情勢가 우리를 한곳으로 세차게 몰아 넣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3 特許情報管理에 대하여

特許情報管理(Patent documentation)의 目的은 特許出願·審査·審判·技術開發·技術調査·技術移轉·研究上의 文獻調査 등을 위하여 특허정보를 活用케 하는데 있다.

특허정보는 先進國에 있어서는 販賣와 保護에 重點을 두며 開發途上國에 있어서는 低廉한 價格으로 買入하는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허조사만 잘 하면 必要한 기술을 골라 가면서 싸게 살 수 있다. 즉 技術移轉費를 節約하는데 이바지 할 것이다. 또 특허정보는 先進, 後進國을

莫論하고 新技術의 硏究開發業務에 貴重한 資料로서 活用될 수 있고 有益한 길잡이도 된다. 한편으로는 一般的 科學硏究에 대해서도 큰 도움을 준다. 科學者의 立場에서 본다면 아무리 煙幕을 쳐 놓은 특허정보라 할지라도 關聯情報를 徹底히 조사하고 연구를 하면 그 속에 숨어 있는 비밀도 캐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企業的 觀點에서 時間과 經費를 考慮하여 특허나 "노우하우"(know-how)를 사버리는 것이 經濟的일 때도 있는 것이다. 특허와 노우하우는 약간 다르다. 노우하우는 特許技術+經驗技術이라고도 할수 있으며, 특허가 核心이 되어 있으며 經費問題와 경험기술에 있어서 돈과 사람이 投入된 硏究業績이므로 平常時에도 특허정보와 남의 경험기술을 늘 조사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近來에 外國技術의 導入에 있어서 많은 論難이 일고 있다. 즉 買入하지 않아도 될만한 기술까지 비싸게 사 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情報管理가 잘 안되었기 때문이며 여러 會社가 우리나라 안에서도 따로 따로 外國의 한 會社의 同一技術을 사들이고 있음이 判明되었다. 여기에서 損害를 보는 것은 大韓民國이요 得보는 것은 외국 회사이다. 따라서 정보관리는 政府內의 各機關에서도 必要하거니와 企業體, 硏究所에서도 필요한 것이다.

어떤 기업체는 意慾的으로 新製品을 만들어 놓고, 輸出船積을 앞두고서 허둥지둥 相對國의 特許 存在與否를 조사하기 시작 한다. 만일에 特許侵害가 생긴다고 하면 그간의 硏究資費, 人力, 施設投資, 輸出信用은 어떻게 되겠는가? 事前에 특허정보를 관리하였어야 했을 것이다.

특허정보관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특허자료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자료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고 생각된다.

特許資料：
- **1次資料(特許明細書, 特許, 實用新案出願公報, 公開公報)**
- **2次資料(特許抄錄·索引)**
- **分類資料(分類表, 分類定義, 分類索引)**

形態別：**書册(印刷物), 마이크로 필름, 磁氣테잎(M.T)**

情報別：**技術情報, 權利情報(特許請求範圍)**

發行機關別：**政府內 特許局, 情報센터, 協會, 特許情報會社, 其他**

分類別：**I.P.C, 알파벳順, 人名順, 商品別, 出願順別, 其他**

企業目的別(分野別)：**自社業務와 관련되는 技術分野, 輸出先別, 特許登錄原簿, 各種索引(年間索引), 殘存權利目錄.**

이상과 같이 특허자료는 複雜하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豫備知識을 많이 쌓은 뒤에 資料蒐集에 着手하여야 할 것이다. 現在로 보아서는 16mm 마이크로 필림을 求하는 것이 가장 값싸고 便利하다. 그 다음으로는 英國의 Serwent出版社에서 發行하는 British Patents Abstracts (全部門의 技術抄錄이며 世界 主要9個國의 것을 取扱하고 있음)와 같은 抄錄誌가 有益하다. 日本것으로는 日本特許情報센터에서 發行하는 全部門에 걸친 公開特許出願 抄錄誌가 便利하다. 이와 같은 마이크로필림이나 또는 초록지를 통하여 다음 段階로 原文書인 明細書에 接하는 것이 常例이다.

특허자료는 情報센터 같은 곳에서 加工·壓縮處理 또는 電算化 處理가 되지만 기업체 같은 곳에서는 카드式整理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技術情報抄錄과 權利情報抄錄의 두가지를 어떻게처리 할것인가 하는 문제가 論議될 것이다.

權利情報는 特許請求範圍를 말하며, 發明의 新規性改良點 등의 核心部分이다. 펀치카아드 같은 것이 有用할것이며 아예 지금부터 I P.C(國際特許分類表)方式의 분류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賢明할 것이다. 이때 現行의 분류코드와 I.P.C 코드를 重出併行시켜 놓으면 기술과 권리의 兩面을 檢討할 수 있는 愼重性을 期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을 要約하면, 첫째로 특허정보를 좀더 기술정보로서의 側面에서 다루지 않으면 기술의 發展이 保障되지 않는다는 점과 둘째로 특허자료의 數와 종류가 많고 複雜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를 충분히 하여야만 특허라는 이름의 榮光과 繁榮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